

(가칭)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적 공연·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② 이 법에서 “전통공예품”이란 「문화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중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전승자”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강습할 수 있는 사람
2. 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강습할 수 있는 단체
3. 전승교수: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체득하고 강습할 수 있는 사람
4. 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
5. 전승공동체: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승해 온 주민, 마을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진흥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의 구현과 향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교육 및 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위하여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무형문화유산위원회

- 제10조(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및 4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④ 위원장과 위원,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유산 시행계획 및 그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공동체 및 전승교수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국가무형문화유산

- 제13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제32조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이 아닌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지정을 통하여 전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는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으로 본다.
- ④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및 지원
 3. 전수교육 및 활동 지원
 4.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정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이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지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절차에서 사기, 위계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전승이 단절 또는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8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성질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공동체를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인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공동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의 인정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의 보유자의 인정기간은 만80세까지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필요한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기여도 및 윤리성 등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교육과 활동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보유자가 만80세에 달한 경우
 2. 무형문화유산의 전수(傳授) 교육 또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인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해당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또는 명예보유자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기, 위계 또는 착오가 있었던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전형(典型)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단체 인정 당시의 기량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비영리법인이 해산된 경우
-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 인정 당시의 전승여건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2.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가 보유단체로 변경 인정된 경우
- ④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해제 시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공동체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 ⑥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및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및 공개

- 제25조(전수교육 등) ①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수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승교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내용 및 전수교육의 해태 등으로 인한 지원 중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 수준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전수교육의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수증의 교부를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예능 또는 기능 심사평가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수증을 회수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의 선정과 심사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이수증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조(전승교수) ①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이외에 전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승교수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해제 시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보유단체로부터의 탈퇴 또는 전수교육의 불성실 등으로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전승교수가 만80세에 달한 경우

제28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수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학에서의 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유산 중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대학을 전수교육 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 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수교육 대학의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수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장학금 지급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해당 과정을 수료한 학생 가운데 해당 대학 총장의 이수자격 심사를 통과한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학 총장의 이수자격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 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과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시 · 도무형문화유산

- 제31조(시·도무형문화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가 시·도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성질상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준용하여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⑦ 시·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공동체, 전승교수, 전수장학생 등의 인정·선정 및 해제, 공개 및 기타 전승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3조(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7 장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제34조(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통공예품 재료 구입 지원
2. 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긴급지원
3. 전승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4.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수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국가무형문화유산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학교등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6조(행사 및 축제 등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이 관광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전통공예 기술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통공예품의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 중 전통공예 분야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생산하는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명품’으로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인증표시를 받지 아니한 상품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39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명품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심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전통공예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표시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인증표시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인증 이후 정기적 심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5. 기타 인증한 기준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② 인증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다.

제40조(전통공예품 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을 구입 후 대여하는 전통공예품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공예품 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무형문화유산진흥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품 제작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지원
2. 전통공예품 인증 업무 지원

3. 전통공예품 구입, 대여, 전시 등 공예품 은행 운영
4. 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5.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6. 그 밖의 무형문화유산 진흥에 관한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44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협약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및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전승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기록화)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기록을 수집·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관련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항구적으로 유지, 보존하여야 하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송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송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송자의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권리의 보호)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송공동체, 전송교수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할 수 없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또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원
3. 제5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2조(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의 사칭)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송공동체, 전송교수 및 이수자를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사람
2.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제54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무형문화유산 명품으로 표시를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자, 전승교수 인정 연령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정하는 보유자, 전승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는 제13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제31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은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이수자, 전승교수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유산

② 의료급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전통무예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예를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유산과 시·도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⑤ 주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

형문화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⑥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⑦ 평생교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